

베트남대사관 사증신청 안내

【베트남대사관, 2025.10.20】

유의 사항

1.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 사증신청이 가능하고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을 사증신청서에 붙여야함
2. 사증신청서는 모든 항목을 사실에 맞게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와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증불허 및 한국입국이 금지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3. 사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임(별도로 유효기간이 명시된 경우 제외)
4. 사증신청을 대행사 등 타인에게 위임한 경우, 신청인 본인이 신청서 및 구비서류 내용이 진정하게 작성되었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직접 서명해야함
5. 사증신청을 대행하는 여행사, [유학원](#) 또는 위임받은 개인은 신청서가 공란 없이 정확하게 작성되고 신청인이 직접 서명하였는 지 여부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신청해야함
6. 당관에서 사증불허를 받은 후 사정변경을 증명하는 소명자료 없이 동일한 비자를 신청할 경우 불허일로부터 3개월(결혼이민비자는 6개월) 경과 후 재신청이 가능함
7. 비자종류별 심사기간은 자료 보완, 제출 서류의 확인 등 여러 공관 사정에 따라 심사 기일이 연장될 수 있음
8. 비자발급 여부 및 불허사유는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의 「진행현황 조회」 메뉴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하며 사증신청시에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범죄경력증명서는 베트남 담당부서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2호 서식을 제출해야하며 전자적으로 서명된 증명서는 접수 받지 않음

비자신청 안내

1. 당관 관할지역 : QUANG TRI성 포함한 북쪽지역
2.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는 베트남 국민 등

□ 베트남 국민

- 원칙 : 주소지가 대사관 관할지역인 베트남 국민
- 예외
 1. 직계가족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성인 1인 이상이 대사관 관할 주소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동인이 대사관에 직계가족의 사증을 함께 신청 가능
 2. 국가 및 지자체, 기업, 학교 등 단체의 대표 또는 직원으로 국내 기관으로부터 초청을 받아 상용 등의 목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국가, 기업 등 단체의 소재지가 대사관 관할지역인 경우
 3. 유학, 어학연수의 경우 당관 관할 주소지가 아닌 베트남인이 당관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의 재학생 및 졸업생인 경우 대사관에 신청 가능
※ 당관 관할지역 주소지를 가진 사람은 베트남대사관에 신청 가능
 4. 타공관 관할지역 거주자의 경우 대사관 관할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거주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외국인(법무부 고시 31개국 국민인 경우)

- 유효한 베트남 장기비자를 소지하고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며 체류지가 대사관 관할인 외국인

▪ 법무부 고시국가 (31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시리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이라크, 예멘,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소말리아, 감비아, 세네갈

□ 외국인(법무부 고시 31개국 국민이 아닌 경우)

- 베트남에 장기 비자 또는 거주증을 소지하고 체류지가 대사관 관할인 외국인

□ 사증발급인정서

- 유효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베트남 국민과 외국인은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할 수 있음
 - 단, 호텔유흥(E-6-2) 자격의 사증발급인정서를 소지한 자가 법무부 고시 31 개국 국민인 경우에는 영주권 · 유효한 베트남 장기비자를 소지하고 2년 이상 계속 체류하며 체류지가 대사관 관할인 외국인이 경우 신청 가능

3 대사관에 사증을 신청하는 방법

□ 사증을 신청하는 본인이 사증신청센터에 직접 신청 가능

- 단순노무(E-9) 비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

□ 대행신청

- 직계가족의 경우 1인이 다른 직계가족의 사증을 대행신청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첨부
- 직계가족의 주소지 관할이 다른 경우 대사관 관할 주소지를 갖고 있는 성인이 다른 직계가족의 사증을 함께 신청 가능
 - ※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첨부
 - ※ 대사관 관할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도 비자를 신청해야 인정
- 대사관 지정 및 등록여행사를 통하여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결혼비자 및 단순노무(E-9) 비자를 제외한 모든 비자 대행신청 가능
- 상용비자 등의 경우 동일 회사, 기관의 직원이 대행신청 가능
- 단순노무(E-9) 비자는 COLAB(베트남 송출기관) 대행 신청만 가능
- 법무부 지정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은 의료관광 대행신청 가능
- 대사관 관할지역에 소재한 유학원은 D-2(유학) 및 D-4(어학연수)만 대행가능

4. 비자 신청 및 교부장소(하노이 비자신청센터)

- 업무시간 09:00 ~ 17:00(점심시간 계속 근무)
- 주소 : Discovery building Tang 12, 302 Cau Giay District, Dich Vong Ward, Cau Giay District, Hanoi

- 전화번호 : 024-7100-1212
- e-mail 주소 : kvac@visaforkorea-vt.com
-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visaforkorea-vt.com>
- 센터수수료 : 390,000동(VND)

5. 비자 수수료

구분	단수비자			더블비자	복수비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결혼이민	체류기간 91일 이상		
수수료(USD)	20\$	30\$	50\$	60\$	80\$

- 비자발급이 불허되거나 복수비자 신청자에게 단수비자가 발급되더라도 수수료 및 차액을 반환하지 않음

6. 비자 종류별 요건, 구비서류 및 심사기간

- 비자종류별 요건, 구비서류 및 심사기간은 대사관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